

#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안)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 및 비접촉 체온 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할,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분양 상담 전화(☎1566-257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중전 제한기간 3~10년) 적발 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됨.

- 해당첨제한 강화 :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해당첨제한기간 면적 무관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 시 면적무관 7년간 해당첨 제한 적용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30입니다.(청약자격요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요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속초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이상 거주자(2020년 04월 30일 이전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시우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준)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 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해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8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8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 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 일체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60%)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lottecastle.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0.08.12 (수)		2020.08.13 (목)	2020.08.14 (금)	2020.08.21 (금)	2020.08.24 (월) ~2020.08.30 (일)	2020.09.01 (화) ~2020.09.03 (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한국감정원 청약 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 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ul>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추천 미 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 건축과 - 33679호(2020.07.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36-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9층 총8개동 568세대 일반분양

[특별공급 22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지하주차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7.0m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7m이상임

■ 입주시기 : 2023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 계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57	01	59.8800	59	59.8800	21.0402	80.9202	38.1510	119.0712	31.6913	37	3	7	3	1	14	23	2
		02	79.9400A	79A	79.9400	26.5526	106.4926	50.9317	157.4243	42.3080	149	14	29	14	4	61	88	8
		03	79.7500B	79B	79.7500	26.5340	106.2840	50.8106	157.0946	42.2075	24	2	4	2	-	8	16	1
		04	84.9800A	84A	84.9800	28.3420	113.3220	54.1429	167.4649	44.9754	195	19	39	19	5	82	113	9
		05	84.6000B	84B	84.6000	30.0448	114.6448	53.9006	168.5454	44.7743	49	4	9	4	1	18	31	2
		06	84.8100C	84C	84.8100	29.4186	114.2286	54.0345	168.2631	44.8855	84	8	16	8	2	34	50	4
		07	84.9600D	84D	84.9600	28.1369	113.0969	54.1301	167.2270	44.9649	24	2	4	2	-	8	16	2
		08	117.6700A	117A	117.6700	41.4058	159.0758	74.9704	234.0462	62.2765	2	-	-	-	-	-	2	-
		09	117.5900B	117B	117.5900	42.6153	160.2053	74.9194	235.1247	62.2342	1	-	-	-	-	-	1	-
		10	128.1600A	128A	128.1600	46.8796	175.0396	81.7356	256.7752	67.8284	1	-	-	-	-	-	1	-
		11	128.9700B	128B	128.9700	46.2168	175.1868	82.1700	257.3568	68.2570	1	-	-	-	-	-	1	-
		12	128.8600C	128C	128.8600	44.8587	173.7187	82.0998	255.8185	68.1988	1	-	-	-	-	-	1	-
합 계											568	52	108	52	13	225	343	28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공급세 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1.01.11	2021.06.10	2021.11.10	2022.04.11	2022.08.10	2022.11.10		
59	37	104동 3,4호	1층	1	109,516,710	153,113,290		262,630,000	5,000,000	21,263,000	26,263,000	26,263,000	26,263,000	26,263,000	26,263,000	26,263,000	78,789,000	
			2층	2	113,228,010	158,301,990		271,530,000	5,000,000	22,153,000	27,153,000	27,153,000	27,153,000	27,153,000	27,153,000	27,153,000	27,153,000	81,459,000
			3층	2	116,322,150	162,627,850		278,950,000	5,000,000	22,895,000	27,895,000	27,895,000	27,895,000	27,895,000	27,895,000	27,895,000	27,895,000	83,685,000
			4-5층	4	118,715,730	165,974,270		284,690,000	5,000,000	23,469,000	28,469,000	28,469,000	28,469,000	28,469,000	28,469,000	28,469,000	28,469,000	85,407,000
			6-7층	4	120,400,410	168,329,590		288,730,000	5,000,000	23,873,000	28,873,000	28,873,000	28,873,000	28,873,000	28,873,000	28,873,000	28,873,000	86,619,000
			8-10층	6	122,076,750	170,673,250		292,750,000	5,000,000	24,275,000	29,275,000	29,275,000	29,275,000	29,275,000	29,275,000	29,275,000	29,275,000	87,825,000
			11-15층	10	123,748,920	173,011,080		296,760,000	5,000,000	24,676,000	29,676,000	29,676,000	29,676,000	29,676,000	29,676,000	29,676,000	29,676,000	89,028,000
			16-20층	8	125,416,920	175,343,080		300,760,000	5,000,000	25,076,000	30,076,000	30,076,000	30,076,000	30,076,000	30,076,000	30,076,000	30,076,000	90,228,000
79A	87	101동4호 102동1,2호 103동1,2호	1층	2	136,955,310	191,474,690		328,430,000	5,000,000	27,843,000	32,843,000	32,843,000	32,843,000	32,843,000	32,843,000	32,843,000	98,529,000	
			2층	5	141,596,520	197,963,480		339,560,000	5,000,000	28,956,000	33,956,000	33,956,000	33,956,000	33,956,000	33,956,000	33,956,000	101,868,000	
			3층	5	145,466,280	203,373,720		348,840,000	5,000,000	29,884,000	34,884,000	34,884,000	34,884,000	34,884,000	34,884,000	34,884,000	104,652,000	
			4-5층	10	148,460,340	207,559,660		356,020,000	5,000,000	30,602,000	35,602,000	35,602,000	35,602,000	35,602,000	35,602,000	35,602,000	106,806,000	
			6-7층	10	150,566,190	210,503,810		361,070,000	5,000,000	31,107,000	36,107,000	36,107,000	36,107,000	36,107,000	36,107,000	36,107,000	108,321,000	
			8-10층	15	152,663,700	213,436,300		366,100,000	5,000,000	31,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109,830,000	
			11-15층	23	154,752,870	216,357,130		371,110,000	5,000,000	32,111,000	37,111,000	37,111,000	37,111,000	37,111,000	37,111,000	37,111,000	111,333,000	
			16-20층	9	156,842,040	219,277,960		376,120,000	5,000,000	32,612,000	37,612,000	37,612,000	37,612,000	37,612,000	37,612,000	37,612,000	112,836,000	

22	103동 4호	21층 이상	8	158,931,210	222,198,790		381,130,000	5,000,000	33,113,000	38,113,000	38,113,000	38,113,000	38,113,000	38,113,000	38,113,000	114,339,000	
		3층	1	153,681,180	214,858,820		368,540,000	5,000,000	31,854,000	36,854,000	36,854,000	36,854,000	36,854,000	36,854,000	36,854,000	36,854,000	110,562,000
		4-5층	2	156,846,210	219,283,790		376,130,000	5,000,000	32,613,000	37,613,000	37,613,000	37,613,000	37,613,000	37,613,000	37,613,000	37,613,000	112,839,000
		6-7층	2	159,068,820	222,391,180		381,460,000	5,000,000	33,146,000	38,146,000	38,146,000	38,146,000	38,146,000	38,146,000	38,146,000	38,146,000	114,438,000
		8-10층	3	161,283,090	225,486,910		386,770,000	5,000,000	33,677,000	38,677,000	38,677,000	38,677,000	38,677,000	38,677,000	38,677,000	38,677,000	116,031,000
		11-15층	5	163,489,020	228,570,980		392,060,000	5,000,000	34,206,000	39,206,000	39,206,000	39,206,000	39,206,000	39,206,000	39,206,000	39,206,000	117,618,000
		16-20층	5	165,699,120	231,660,880		397,360,000	5,000,000	34,736,000	39,736,000	39,736,000	39,736,000	39,736,000	39,736,000	39,736,000	39,736,000	119,208,000
40	105동 3, 4호	21층 이상	4	167,905,050	234,744,950		402,650,000	5,000,000	35,265,000	40,265,000	40,265,000	40,265,000	40,265,000	40,265,000	40,265,000	120,795,000	
		1층	2	146,796,510	205,233,490		352,030,000	5,000,000	30,203,000	35,203,000	35,203,000	35,203,000	35,203,000	35,203,000	35,203,000	105,609,000	
		2층	2	151,775,490	212,194,510		363,970,000	5,000,000	31,397,000	36,397,000	36,397,000	36,397,000	36,397,000	36,397,000	36,397,000	109,191,000	
		3층	2	155,920,470	217,989,530		373,910,000	5,000,000	32,391,000	37,391,000	37,391,000	37,391,000	37,391,000	37,391,000	37,391,000	112,173,000	
		4-5층	4	159,131,370	222,478,630		381,610,000	5,000,000	33,161,000	38,161,000	38,161,000	38,161,000	38,161,000	38,161,000	38,161,000	114,483,000	
		6-7층	4	161,387,340	225,632,660		387,020,000	5,000,000	33,702,000	38,702,000	38,702,000	38,702,000	38,702,000	38,702,000	38,702,000	116,106,000	
		8-10층	6	163,634,970	228,775,030		392,410,000	5,000,000	34,241,000	39,241,000	39,241,000	39,241,000	39,241,000	39,241,000	39,241,000	117,723,000	
79B	24	105동 1호	11-15층	10	165,874,260	231,905,740		397,780,000	5,000,000	34,778,000	39,778,000	39,778,000	39,778,000	39,778,000	39,778,000	119,334,000	
			16-20층	10	168,113,550	235,036,450		403,150,000	5,000,000	35,315,000	40,315,000	40,315,000	40,315,000	40,315,000	40,315,000	120,945,000	
			2층	1	147,125,940	205,694,060		352,820,000	5,000,000	30,282,000	35,282,000	35,282,000	35,282,000	35,282,000	35,282,000	105,846,000	
			3층	1	151,145,820	211,314,180		362,460,000	5,000,000	31,246,000	36,246,000	36,246,000	36,246,000	36,246,000	36,246,000	36,246,000	108,738,000
			4-5층	2	154,256,640	215,663,360		369,920,000	5,000,000	31,992,000	36,992,000	36,992,000	36,992,000	36,992,000	36,992,000	36,992,000	110,976,000
			6-7층	2	156,441,720	218,718,280		375,160,000	5,000,000	32,516,000	37,516,000	37,516,000	37,516,000	37,516,000	37,516,000	37,516,000	112,548,000
			8-10층	3	158,622,630	221,767,370		380,390,000	5,000,000	33,039,000	38,039,000	38,039,000	38,039,000	38,039,000	38,039,000	38,039,000	114,117,000
84A	19	104동 1호	11-15층	5	160,791,030	224,798,970		385,590,000	5,000,000	33,559,000	38,559,000	38,559,000	38,559,000	38,559,000	38,559,000	115,677,000	
			16-20층	5	162,963,600	227,836,400		390,800,000	5,000,000	34,080,000	39,080,000	39,080,000	39,080,000	39,080,000	39,080,000	117,240,000	
			21층 이상	5	165,132,000	230,868,000		396,000,000	5,000,000	34,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1층	1	148,130,910	207,099,090		355,230,000	5,000,000	30,523,000	35,523,000	35,523,000	35,523,000	35,523,000	35,523,000	106,569,000	
			2층	1	153,155,760	214,124,240		367,280,000	5,000,000	31,728,000	36,728,000	36,728,000	36,728,000	36,728,000	36,728,000	110,184,000	
			3층	1	157,338,270	219,971,730		377,310,000	5,000,000	32,731,000	37,731,000	37,731,000	37,731,000	37,731,000	37,731,000	113,193,000	
			4-5층	2	160,578,360	224,501,640		385,080,000	5,000,000	33,508,000	38,508,000	38,508,000	38,508,000	38,508,000	38,508,000	115,524,000	
84A	27	107동 3호	6-7층	2	162,855,180	227,684,820		390,540,000	5,000,000	34,054,000	39,054,000	39,054,000	39,054,000	39,054,000	39,054,000	117,162,000	
			8-10층	3	165,123,660	230,856,340		395,980,000	5,000,000	34,598,000	39,598,000	39,598,000	39,598,000	39,598,000	39,598,000	118,794,000	
			11-15층	5	167,383,800	234,016,200		401,400,000	5,000,000	35,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40,140,000	120,420,000	
			16-19층	4	169,639,770	237,170,230		406,810,000	5,000,000	35,681,000	40,681,000	40,681,000	40,681,000	40,681,000	40,681,000	122,043,000	
			2층	1	157,796,970	220,613,030		378,410,000	5,000,000	32,841,000	37,841,000	37,841,000	37,841,000	37,841,000	37,841,000	113,523,000	
			3층	1	162,108,750	226,641,250		388,750,000	5,000,000	33,875,000	38,875,000	38,875,000	38,875,000	38,875,000	38,875,000	116,625,000	
			4-5층	2	165,444,750	231,305,250		396,750,000	5,000,000	34,675,000	39,675,000	39,675,000	39,675,000	39,675,000	39,675,000	119,025,000	
84A	56	107동 4호 108동 4호	6-7층	2	167,788,290	234,581,710		402,370,000	5,000,000	35,237,000	40,237,000	40,237,000	40,237,000	40,237,000	40,237,000	120,711,000	
			8-10층	3	170,127,660	237,852,340		407,980,000	5,000,000	35,798,000	40,798,000	40,798,000	40,798,000	40,798,000	40,798,000	122,394,000	
			11-15층	5	172,454,520	241,105,480		413,560,000	5,000,000	36,356,000	41,356,000	41,356,000	41,356,000	41,356,000	41,356,000	124,068,000	
			16-20층	5	174,781,380	244,358,620		419,140,000	5,000,000	36,914,000	41,914,000	41,914,000	41,914,000	41,914,000	41,914,000	125,742,000	
			21층 이상	8	177,112,410	247,617,590		424,730,000	5,000,000	37,473,000	42,473,000	42,473,000	42,473,000	42,473,000	42,473,000	127,419,000	
			1층	2	153,368,430	214,421,570		367,790,000	5,000,000	31,779,000	36,779,000	36,779,000	36,779,000	36,779,000	36,779,000	110,337,000	
			2층	2	158,568,420	221,691,580		380,260,000	5,000,000	33,026,000	38,026,000	38,026,000	38,026,000	38,026,000	38,026,000	114,078,000	
84A	12	107동 2호	3층	2	162,901,050	227,748,950		390,650,000	5,000,000	34,065,000	39,065,000	39,065,000	39,065,000	39,065,000	39,065,000	117,195,000	
			4-5층	4	166,253,730	232,436,270		398,690,000	5,000,000	34,869,000	39,869,000	39,869,000	39,869,000	39,869,000	39,869,000	119,607,000	
			6-7층	4	168,609,780	235,730,220		404,340,000	5,000,000	35,434,000	40,434,000	40,434,000	40,434,000	40,434,000	40,434,000	121,302,000	
			8-10층	6	170,961,660	239,018,340		409,980,000	5,000,000	35,998,000	40,998,000	40,998,000	40,998,000	40,998,000	40,998,000	122,994,000	
			11-15층	10	173,301,030	242,288,970		415,590,000	5,000,000	36,559,000	41,559,000	41,559,000	41,559,000	41,559,000	41,559,000	124,677,000	
			16-20층	10	175,640,400	245,559,600		421,200,000	5,000,000	37,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42,120,000	126,360,000	
			21층 이상	16	177,979,770	248,830,230		426,810,000	5,000,000	37,681,000	42,681,000	42,681,000	42,681,000	42,681,000	42,681,000	128,043,000	
81	101동 1,2호 108동 1,2호	1층	1	164,594,070	230,115,930		394,710,000	5,000,000	34,471,000	39,471,000	39,471,000	39,471,000	39,471,000	39,471,000	39,471,000	118,413,000	
		2층	1	170,173,530	237,916,470		408,090,000	5,000,000	35,809,000	40,809,000	40,809,000	40,809,000	40,809,000	40,809,000	122,427,000		
		3층	1	174,823,080	244,416,920		419,240,000	5,000,000	36,924,000	41,924,000	41,924,000	41,924,000	41,924,000	41,924,000	125,772,000		
		4-5층	2	178,421,790	249,448,210		427,870,000	5,000,000	37,787,000	42,787,000	42,787,000	42,787,000	42,787,000	42,787,000	128,361,000		
		6-7층	2	180,948,810	252,981,190		433,930,000	5,000,000	38,393,000	43,393,000	43,393,000	43,393,000	43,393,000	43,393,000	130,179,000		
		8-10층	3	183,467,490	256,502,510		439,970,000	5,000,000	38,997,000	43,997,000	43,997,000	43,997,000	43,997,000	43,997,000	131,991,000		
		11-12층	2	185,982,000	260,018,000		446,000,000	5,000,000	39,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3층	4	178,000,620	248,859,380		426,860,000	5,000,000	37,686,000	42,686,000	42,686,000	42,686,000	42,686,000	42,686,000	128,058,000		
			4-5층	8	181,661,880	253,978,120		435,640,000	5,000,000	38,564,000	43,564,000	43,564,000	43,564,000	43,564,000	43,564,000	43,564,000	130,692,000	
			6-7층	8	184,238,940	257,581,060		441,820,000	5,000,000	39,182,000	44,182,000	44,182,000	44,182,000	44,182,000	44,182,000	44,182,000	132,546,000	
			8-10층	11	186,803,490	261,166,510		447,970,000	5,000,000	39,797,000	44,797,000	44,797,000	44,797,000	44,797,000	44,797,000	44,797,000	134,391,000	
			11-15층	15	189,359,700	264,740,300		454,100,000	5,000,000	40,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136,230,000	
			16-20층	12	191,920,080	268,319,920		460,240,000	5,000,000	41,024,000	46,024,000	46,024,000	46,024,000	46,024,000	46,024,000	46,024,000	138,072,000	
			21층 이상	16	194,476,290	271,893,710		466,370,000	5,000,000	41,637,000	46,637,000	46,637,000	46,637,000	46,637,000	46,637,000	46,637,000	139,911,000	
			1층	1	151,375,170	211,634,830		363,010,000	5,000,000	31,301,000	36,301,000	36,301,000	36,301,000	36,301,000	36,301,000	36,301,000	36,301,000	108,903,000
			2층	1	156,508,440	218,811,560		375,320,000	5,000,000	32,532,000	37,532,000	37,532,000	37,532,000	37,532,000	37,532,000	37,532,000	37,532,000	112,596,000
84B	22	103동 3호	3층	1	160,782,690	224,787,310		385,570,000	5,000,000	33,557,000	38,557,000	38,557,000	38,557,000	38,557,000	38,557,000	38,557,000	115,671,000	
			4-5층	2	164,093,670	229,416,330		393,510,000	5,000,000	34,351,000	39,351,000	39,351,000	39,351,000	39,351,000	39,351,000	39,351,000	118,053,000	
			6-7층	2	166,420,530	232,669,470		399,090,000	5,000,000	34,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39,909,000	119,727,000	
			8-10층	3	168,739,050	235,910,950		404,650,000	5,000,000	35,465,000	40,465,000	40,465,000	40,465,000	40,465,000	40,465,000	40,465,000	121,395,000	
			11-15층	5	171,045,060	239,134,940		410,180,000	5,000,000	36,018,000	41,018,000	41,018,000	41,018,000	41,018,000	41,018,000	41,018,000	123,054,000	
			16-20층	5	173,355,240	242,364,760		415,720,000	5,000,000	36,572,000	41,572,000	41,572,000	41,572,000	41,572,000	41,572,000	41,572,000	124,716,000	
			21층 이상	2	175,665,420	245,594,580		421,260,000	5,000,000	37,126,000	42,126,000	42,126,000	42,126,000	42,126,000	42,126,000	42,126,000	126,378,000	
			2층	1	170,594,700	238,505,300		409,100,000	5,000,000	35,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40,910,000	122,730,000
			3층	1	175,252,590	245,017,410		420,270,000	5,000,000	37,027,000	42,027,000	42,027,000	42,027,000	42,027,000	42,027,000	42,027,000	42,027,000	126,081,000
84C	27	108동 3호	4-5층	2	178,859,640	250,060,360		428,920,000	5,000,000	37,892,000	42,892,000	42,892,000	42,892,000	42,892,000	42,892,000	42,892,000	128,676,000	
			6-7층	2	181,399,170	253,610,830		435,010,000	5,000,000	38,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43,501,000	130,503,000		
			8-10층	3	183,922,020	257,137,980		441,060,000	5,000,000	39,106,000	44,106,000	44,106,000	44,106,000	44,106,000	44,106,000	44,106,000	132,318,000	
			11-15층	5	186,440,700	260,659,300		447,100,000	5,000,000	39,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134,130,000	
			16-20층	5	188,959,380	264,180,620		453,140,000	5,000,000	40,314,000	45,314,000	45,314,000	45,314,000	45,314,000	45,314,000	45,314,000	135,942,000	
			21층 이상	8	191,473,890	267,696,110		459,170,000	5,000,000	40,917,000	45,917,000	45,917,000	45,917,000	45,917,000	45,917,000	45,917,000	137,751,000	
			2층	1	158,276,520	221,283,480		379,560,000	5,000,000	32,956,000	37,956,000	37,956,000	37,956,000	37,956,000	37,956,000	37,956,000	113,868,000	
			3층	1	162,600,810	227,329,190		389,930,000	5,000,000	33,993,000	38,993,000	38,993,000	38,993,000	38,993,000	38,993,000	38,993,000	116,979,000	
			4-5층	2	165,949,320	232,010,680		397,960,000	5,000,000	34,796,000	39,796,000	39,796,000	39,796,000	39,796,000	39,796,000	39,796,000	119,388,000	
84D	24	104동 2호	6-7층	2	168,301,200	235,298,800		403,600,000	5,000,000	35,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121,080,000	
			8-10층	3	170,644,740	238,575,260		409,220,000	5,000,000	35,922,000	40,922,000	40,922,000	40,922,000	40,922,000	40,922,000	40,922,000	122,766,000	
			11-15층	5	172,979,940	241,840,060		414,820,000	5,000,000	36,482,000	41,482,000	41,482,000	41,482,000	41,482,000	41,482,000	41,482,000	124,446,000	
			16-20층	5	175,315,140	245,104,860		420,420,000	5,000,000	37,042,000	42,042,000	42,042,000	42,042,000	42,042,000	42,042,000	42,042,000	126,126,000	
			21층 이상	5	177,650,340	248,369,660		426,020,000	5,000,000	37,602,000	42,602,000	42,602,000	42,602,000	42,602,000	42,602,000	42,602,000	127,806,000	
			1층	1	147,055,050	205,594,950		352,650,000	5,000,000	30,265,000	35,265,000	35,265,000	35,265,000	35,265,000	35,265,000	35,265,000	105,795,000	
			2층	1	152,042,370	212,567,630		364,610,000	5,000,000	31,461,000	36,461,000	36,461,000	36,461,000	36,461,000	36,461,000	36,461,000	109,383,000	
			3층	1	156,195,690	218,374,310		374,570,000	5,000,000	32,457,000	37,457,000	37,457,000	37,457,000	37,457,000	37,457,000	37,457,000	112,371,000	
			4-5층	2	159,410,760	222,869,240		382,280,000	5,000,000	33,228,000	38,228,000	38,228,000	38,228,000	38,228,000	38,228,000	38,228,000	114,684,000	
84C	20	105동 2호	6-7층	2	161,670,900	226,029,100		387,700,000	5,000,000	33,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116,310,000		
			8-10층	3	163,922,700	229,177,300		393,100,000	5,000,000	34,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117,930,000		
			11-15층	5	166,166,160	232,313,840		398,480,000	5,000,000	34,848,000	39,848,000	39,848,000	39,848,000	39,848,000	39,848,000	119,544,000		
			16-20층	5	168,409,620	235,450,380		403,860,000	5,000,000	35,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121,158,000	
			1층	2	165,152,850	230,897,150		396,050,000	5,000,000	34,605,000	39,605,000	39,605,000	39,605,000	39,605,000	39,605,000	39,605,000	118,815,000	
			2층	2	170,753,160	238,726,840		409,480,000	5,000,000	35,948,000	40,948,000	40,948,000	40,948,000	40,948,000	40,948,000	40,948,000	122,844,000	
			3층	2	175,419,390	245,250,610		420,670,000	5,000,000	37,067,000	42,067,000	42,067,000	42,067,000	42,067,000	42,067,000	42,067,000	126,201,000	
			4-5층	4	179,030,610	250,299,390		429,330,000	5,000,000	37,933,000	42,933,000	42,933,000	42,933,000	42,933,000	42,933,000	42,933,000	128,799,000	
			6-7층	4	181,565,970	253,844,030		435,410,000	5,000,000	38,541,000	43,541,000	43,541,000	43,541,000	43,541,000	43,541,000	43,541,000	130,623,000	
84C	40	101동 3호 107동 3호	8-10층	6	184,097,160	257,382,840		441,480,000	5,000,000	39,148,000	44,148,000	44,148,000	44,148,000	44,148,000	44,148,000	132,444,000		
			11-15층	7	186,615,840	260,904,160		447,520,000	5,000,000	39,752,000	44,752,000	44,752,000	44,752,000	44,752,000	44,752,000	134,256,000		
			16-20층	5	189,134,520	264,425,480		453,560,000	5,000,000	40,356,000	45,356,000	45,356,000	45,356,000	45,356,000	45,356,000	136,068,000		
			21층 이상	8	191,653,200	267,946,800		459,600,000	5,000,000	40,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137,880,000	
			1층	2	164,264,640	229,655,360		393,920,000	5,000,000	34,392,000	39,392,000	39,392,000	39,392,000	39,392,000	39,392,000	39,392,000	118,176,000	
			2층	2	169,831,590	237,438,410		407,270,000	5,000,000	35,727,000	40,727,000	40,727,000	40,727,000	40,727,000	40,727,000	40,727,000	122,181,000	
			3층	2	174,472,800	243,927,200		418,400,000	5,000,000	36,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41,840,000	125,520,000	
			4-5층	4	178,067,340	248,952,660		427,020,000	5,000,000	37,702,000	42,702,000	42,702,000	42,702,000	42,702,000	42,702,000	42,702,000	128,106,000	
			6-7층	4	180,590,190	252,479,810		433,070,000	5,000,000	38,307,000	43,307,000	43,307,000	43,307,000	43,307,000	43,307,000	43,307,000	129,921,000	
84D	24	106동 1,2호	8-10층	6	183,104,700	255,99												

117B	1	105동 3호	21층	1	372,330,000	520,600,500	52,069,500	945,000,000	20,000,000	7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283,500,000
128A	1	106동 1호	13층	1	375,088,000	524,456,800	52,455,200	952,000,000	20,000,000	7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95,200,000	285,600,000
128B	1	107동 1호	13층	1	378,240,000	528,864,000	52,896,000	960,000,000	20,000,000	76,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288,000,000
128C	1	108동 1호	29층	1	509,836,000	712,864,600	71,299,400	1,294,000,000	20,000,000	109,400,000	129,400,000	129,400,000	129,400,000	129,400,000	129,400,000	388,200,000

##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추가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가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가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확장미선택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가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가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견본주택은 84A, 84B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59, 79A, 79B, 84C, 84D, 117A, 117B, 128A, 128B, 128C)은 견본주택 내 모형 또는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기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가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	79A	79B	84A	84B	84C	84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	4	-	4	2	1	1	12
	국가유공자 등	1	2	-	4	1	2	-	1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2	-	3	-	1	-	6
	장기 복무 세대군인	1	2	1	2	-	2	-	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4	1	6	1	2	1	1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6	22	3	30	7	12	3	83
		일반공급(25%)	1	7	1	9	2	4	1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14	2	19	4	8	2	5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4	-	5	1	2	-	13	
<b>합 계</b>		<b>14</b>	<b>61</b>	<b>8</b>	<b>82</b>	<b>18</b>	<b>34</b>	<b>8</b>	<b>225</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을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본 산출결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정하였음.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b>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li> </ul>

[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 분	속초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2세대

구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li> <li>※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li> <li>-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li> <li>-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선정 원칙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2세대

구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li> <li>※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li> </ul>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속초시 3개월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속초시 3개월미만 거주하거나 및 속초시를 제외한 강원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li> <li>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본인 신청시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사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가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처 추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처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처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최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108세대**

구분	내 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p>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li> <li>-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지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li> <li>-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li> </ul>
<p><b>당첨자 선정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 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li> <li>▪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li> <li>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li> <li>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li> <li>▪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li> <li>-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li>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li>-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li>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li>※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6,226,343원	6,938,355원	7,594,084원	8,249,813원	8,905,542원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 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 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li> <li>•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해당직장/세무서</li> </ul>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li>※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li> </ul>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ul>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li> <li>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li> </ul>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li> <li>• 사업자등록증명</li> </ul>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li> <li>※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li> </ul>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li> <li>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관리공단</li> <li>- 세무서</li> </ul>

	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매입, 매출이 기재된 부분)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명</li> <li>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li> <li>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등기소</li> </ul>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li> <li>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li>※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해당직장</li> </ul>
국민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li> </ul>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국민연금관리공단</li> </ul>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사실증명</li> <li>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 비치)</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li> <li>건본주택</li> </ul>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13세대

구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li> <li>- 청약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li>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함</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속초시 3개월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전여세대 발생 시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및 속초시를 제외한 강원도 거주자에게 공급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li>-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li> <li>※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li> <li>※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 3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지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속초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선정합니다.</li> <li>•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li> <li>※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li> <li>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신청 가능</li> <li>④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li> </ul> </li> <li>※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8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함</li> <li>②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li> </ul> </li> <li>※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li> </ul> </li> <li>※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li> <li>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li> </ul> </li> </ul>

###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구분	속초시 및 강원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선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 순위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속초시 / 강원도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li> </ul>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시 모두 추첨제로 접수되며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p> <p>- 세대원</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 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p> <p>※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선정합니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p>

	<p>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li> <li>•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 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 18세 이상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li>※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b>총점</b>	84				
<b>비고</b>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8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및 미계약 당첨자의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 계획)</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속초시 3개월 미만 거주신청자 및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8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8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및 미계약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 계획)</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li> </ul>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건본주택)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 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경과 시 2순위 해당)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12 (수)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건본주택</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0.08.13 (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대행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0.08.14 (금)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신청 시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본인 및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인터넷청약의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진단서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한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진단서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한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온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숲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ul> </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발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5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20.08.21(금)</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

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lottecastl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쏘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21.(금) ~ 2020.08.30.(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2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6**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건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20.08.24.(월) ~ 2020.08.30.(일) 10:00 ~ 16:00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건본주택 (속초시 조양동 1557-1)	※ 예비입주자 포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본인 및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람)

		0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선정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전체),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7 계약체결 안내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등·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9.01.(화) ~ 2020.09.03.(목) 3일간, 10:00 ~ 16:00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건본주택 (속초시 조양동 1557-1 )

-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1차 계약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097-910002-65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097-910002-828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 본 1차, 2차 계약금 납부계획이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납부하여야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금 납부 :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 ※ 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 입금증(분양금 계약금)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li> <li>•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li> </ul>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li> <li>-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li> </ul>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기존주택 처분사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특히 공급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17A, 117B, 128A, 128B, 128C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반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후부체)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 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59	79A	79B	84A	84B	84C	84D	117A	117B	128A	128B	128C
확장금액	11,890,000	12,810,000	13,270,000	13,440,000	12,720,000	14,100,000	14,510,000	16,670,000	17,050,000	20,680,000	20,320,000	21,170,000
계약금(10%)	1,189,000	1,281,000	1,327,000	1,344,000	1,272,000	1,410,000	1,451,000	1,667,000	1,705,000	2,068,000	2,032,000	2,117,000
잔금(90%)	10,701,000	11,529,000	11,943,000	12,096,000	11,448,000	12,690,000	13,059,000	15,003,000	15,345,000	18,612,000	18,288,000	19,053,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계약금 계좌	하나은행	097-910002-669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발코니 확장 잔금 계좌	하나은행	097-910002-834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약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추가선택품목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제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속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지하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주변 조망 사진 및 동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대별 및 조망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의 동측은 중앙동 재개발정비사업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도로, 공원 등 신설될 예정임. 실제 시공시 인접 단지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인접단지의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25m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 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중앙동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횡단보도 위치이동 및 도로가 신설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10m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 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10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동측에 3M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로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중앙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동주택, 공원, 도로 등이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전체 주동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빗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대명빌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3동, 104동, 105동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 단지 서측에 극락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극락사의 종교행사(타종 등)으로 인해 단지 전체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구역면적 26,743.00㎡ 중 남측(우경길)4m, 동측(수복로) 3m , 북측(우경4길) 3m 총 1,400.00㎡를 기부채납하여 대지면적(사업부지) 25,343.00㎡로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음.
- 대지(사업부지)의 북동측 인접대지에 접한 3m의 보행로는 대지(사업부지)내 3m보행로를 이용하여 25m도로로 연결되도록 경관심의 조치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진입로 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 소로3-39, 소로2-16호선)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별도추진)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사업시행자) 후 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 상가 전면, 보행 및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 또는 인근에 웬스 또는 생울타리를 설치 예정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주변에 단차 처리를 위한 구조물의 안전 난간이 계획될 경우 이로 같음될 수 있으며 단지 차량출입구 외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당 현장은 2018년 5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접수(2020년 3월 완료), 2019년 11월 최초 건축심의신청(2019년 12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공동주택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현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84A㎡, 84B㎡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 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건본주택, 분양 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정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김치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단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건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구, 가전 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주택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
-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전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사전 홍보 시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오인, 외벽미감, 식재, 비파도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본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경,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이상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계약 전에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같은 자재라 할지라도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무늬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미감은 변경될 수 있음.
- 속초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면적, 대지비율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 단지 여건사항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리어 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비대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의 돌출입구,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계획 주동의 경우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 커뮤니티시설의 외부입면은 석재마감 및 석재뿔칠 혼합마감임.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 시 석재 적용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내부에 기둥, 벽체 등은 색채 디자인 반영으로 일부 석재 뿔칠이 시공됨.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빔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나 세대별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해당 구조물이나 시설로 인하여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용 E/V는 107동 인접 커뮤니티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105, 107, 108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수경시설이 추가 계획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발생됨.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의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빗바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화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며 동별로 설치 여건 및 보관 가능한 개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관소 설치로 인하여 일부 통행에 불편 및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7개소(공동주택용 6개소,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는 단지 남측에 외부계단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통행 시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각 동별로 설치되지 않아 인근동들이 통합사용하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 및 수거장의 규모가 상이함. 각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정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주민운동시설(분양홍보명: 헬스기든)은 입주인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레벨을 조정 중으로 이로 인하여 해당 공간 주변의 계단, 옹벽 등 구조물 계획이 변경될 예정임.
- 104동, 105동, 108동에 둘러싸인 중앙광장에는 인허가상 미술작품이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위치에 중앙에는 미술작품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녹지가 조성될 예정임.
- 단지 동측 부대복리시설(휘트니스) 상부에는 옥상정원(분양홍보명: 스카이가든)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107동과 108동에 프라이버시, 조망 침해 및 소음, 빗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방면 시선의 부분 차단을 위한 트릴리스형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임.
- 105동 및 108동 옥상에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별도의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정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소방전용도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과 지상주차장2 사이에 어린이 버스 승하차를 위한 드림오프존 및 대가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되는 텃밭의 활용 및 이용은 입주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 북측 보행자 진입로 인근 및 단지 동측 계단형 출입구 인근에 한전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박스의 규모 및 형태는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동선이 추가 계획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에 따라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고,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실외기는 지붕층 및 지상돌출구간, 계단하부, 별도구획공간과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105동 하부 지하2층~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이와 연결한 주동 (104동, 105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108동 하부 지하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이와 연결한 주동 (107동, 108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우측 근린생활시설 주변 지하2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등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결한 근린생활 및 커뮤니티 시설은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우측 근린생활시설 옆 조경구간 한전PAD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 공영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 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 출입구 및 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으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는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제습기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101~105동, 107~108동의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다만, 103동 4호 라인에는 필로티가 아닌, 지하주차장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03동의 1~4호 라인의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 문주는 단지 동측 단지주출입구에 게이트형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단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당 단지에 총 3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107동 북측 하부, 101동과 102동 사이 북측, 105동과 106동 사이 남측 하부)가 있음. 다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의 입차선이 1개소 추가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실의 위치 및 인근 조경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북측으로 단지 부출입구 및 경비실이 설치되며 1, 2, 3, 4호 라인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동측으로 단지 출입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동측으로 외부에 3M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대기공간(맘스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남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남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선권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서측으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남측으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서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선권 및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측으로 단지 부출입구 및 경비실이 설치되며 1, 2호 라인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선권 및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동측으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남측으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상주차장 서측으로 전기용·통신용 등 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전주 2개가 계획되어 있고, 선이 대명빌라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음.
- 103동 남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서측으로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4호라인 하부(지상1~2층)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진동,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2~103동 북측에는 10m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4동 북측으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남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선권 및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서측으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서측과 남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동측으로 미술작품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녹지를 중심으로 한 원형 화차로가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서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서측으로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동측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용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동측 하부에 단지 출입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동측으로 경로당, 텃밭 및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하부 지하2층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에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서측으로 경로당, 텃밭 및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서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하부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6동과 107동 사이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하부 지하2층에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에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북측으로 휘트니스시설(지상1층)과 골프연습장(지하1층), 주민커뮤니티(지하2층)등 이 연결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 일부세대(특히 1호 및 2호)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북측으로 휘트니스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공간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107동 1, 2호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하부 북측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서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선로 및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북측으로 단지 출입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동측으로 휘트니스시설(지상1층)이 연결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 일부세대(특히 1호 및 2호)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동측으로 휘트니스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공간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107동 1, 2호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동측 하부에 지하주차장이 노출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남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선로 및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대기공간(맘스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서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후면에는 대규모 휴게공간(리운지가든)이 조성되며 동별규모, 형태, 시설이 상이하며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 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 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환풍 급기 DA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사 환풍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혹은 이동설치될 수 있음.
- 각동인근 지상층에는 DA(제연DA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 등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 동측 107동 하부 인근 데크진입 1개소 및 단지 서측 103동 지상진출입 1개소 계획되어 있음.
- 당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지하2층은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천정고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 지하층은 램프의 천정고 2.3m로 택배차량 출입 불가함)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이용에 동선간섭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단지 동측 출입구 및 서측 램프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별 주차커리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의 103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위차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세대창고 공간, 기계전기실 등 관련공간 계획으로 인해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층 엘리베이터를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공용홀 에어컨용 실외기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4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 105동 북서측 하부 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정화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108동 남동측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정화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음, 이와 인접한 주동 (104동, 105동, 108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지하층~지하2층) 환풍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수 있으며, 인접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1층 주차장의 일부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옥외주차장 공중에 인근 주택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 일부가 지나갈 수 있음.
- 단지 특성상 주차장은 지상 1층~지하 2층까지, 주차대수는 아파트 730대, 근린생활시설 14대, 총 744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47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시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 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105,106,107,108동의 일부 저층세대) 및 보행도로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이 106동과 107동 하부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비실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측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 북측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됨. 경비실과 주차터미널(차량 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107동 하부 데크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시니어클럽)과 어린이집(키즈클럽)은 105동과 106동, 107동 사이 지상1층에 별도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게스트룸은 106동 하부 지하층에 3개실이 설치되며, 직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은 107동 하부 지하2층부터 지상층의 커뮤니티센터(홀, 라운지, 다이닝카페, 독서실, 실내골프, GX룸, 탈의샤워실, 피트니스 등)에 설치되고 커뮤니티센터의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직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게스트룸 등)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직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캐슬리안센터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 2개소는 캐슬리안센터 이용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단지 출입을 위한 이용으로 사용됨.
-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과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제반사항(정원,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의 부담비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지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106동을 제외한 주동하부에 세대당 1개소의 세대창고가 적용되며, 세대창고의 위치는 세대호수로 지하상층부부터 배분됨. 본공사 시 세대창고내 2단 선반이 설치되고 창고의 외부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철망으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세대창고가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과 천정은 별도의 마감재로 시공됨. 환기설비는 설치되나, 입주 후 결로습기 피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설비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대창고의 제조사 및 사양, 선반형태 및 위치, 시공디테일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2층 각동코어별 1개소씩 설치됨. 단, 추후 본공사 시 그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 지하주차장 램프출입구 측면에 경비실이 별도로 설치됨. 단 경비실의 개수,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보관함 7개소(공동주택 6개소, 근린생활시설 1개소), 자전거보관대 외부설치분 5개소(필로티내 설치분 제외), 외부 드라이에어리어(DA) 47개소, 선큰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단, 분양이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절차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외부설치분은 추가설치될 수 있음

##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분양세대(59㎡, 79㎡, 79B㎡, 84㎡, 84B㎡, 84C㎡, 84D㎡, 117㎡, 117B㎡, 128㎡, 128B㎡, 128C㎡)로 구분되어 있음.
-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간 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세대와 하층부세대의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법적면적은 동일함).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받침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 및 현관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전부품,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59㎡, 79㎡, 79B㎡, 84㎡, 84B㎡, 84C㎡, 84D㎡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대피공간 출입문은 도어스토퍼가 설치되며,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비상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 단, 피난기구는 상하층 좌우 교차되어 설치됨으로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동별 그 위치가 상이함. 79㎡, 84㎡, 84B㎡ 타입은 대피공간과 실외기실이 인접하여 실외기실문에 도어스토퍼가 설치되며 나머지 타입의 실외기실 문에는 도어스토퍼가 설치 안 됨. 117㎡, 117B㎡, 128㎡, 128B㎡, 128C㎡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외부 테라스로 대피 가능하도록 인허가 승인받았음.
- 103동 저층부 1, 2, 3, 4호라인(특히 101~103, 201~203, 301~304호)의 경우, 지하주차장 램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소음, 조명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1, 2, 3호라인(특히 202호, 302호)의 경우, 단지 캐슬리안 센터 옥상에 설치된 조경공간에 의해 소음, 조명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공간과 인접세대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려하여 조경 공간 주변에 차단벽을 계획하였으나, 해당세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세대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항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세부 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진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부위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경치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사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팬트하우스의 오배수 배관 위치에 따라 하층부 세대는 배관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함.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확장 미선택 세대의 경우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MMA)이 시공되고 주방벽 약세시리가 확장시와 상이하게 적용되며 주택형별 주방상판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함.
- 79Am<sup>2</sup>, 79Bm<sup>2</sup> 공용욕실, 84Am<sup>2</sup>, 84Bm<sup>2</sup>, 84Cm<sup>2</sup>, 84Dm<sup>2</sup> 공용/부부욕실은 확장 시 욕조형 또는 샤워부스형으로 욕실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음. 선택형에 따라 제공되는 욕실 액세서리가 상이하며, 벽타일 및 비박타일의 디자인은 같으나 타일나누기가 선택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됨
- 현관중문(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 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하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막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현관 신발장, 복도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시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의 프레임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임.
-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창호는 투시형 난간이 적용된 PVC 이중창이 설치되며 투시형 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투시형 난간이 적용된 PVC 단창이 설치되며 투시형 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 84Cm<sup>2</sup>의 다용도실 창호의 개폐방식은 프로젝트창 형태로 59m<sup>2</sup>, 79Am<sup>2</sup>, 79Bm<sup>2</sup>, 84Am<sup>2</sup>, 84Bm<sup>2</sup>, 84Dm<sup>2</sup>, 117Am<sup>2</sup>, 117Bm<sup>2</sup>, 128Am<sup>2</sup>, 128Bm<sup>2</sup>, 128Cm<sup>2</sup>의 미서기창 방식과 상이함.
- 59m<sup>2</sup>, 84Cm<sup>2</sup>, 84Dm<sup>2</sup>, 117Am<sup>2</sup>은 다용도실 천정 내 설비 배관 설치로 인하여 천정 마감재가 설치되어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천장고와 마감재가 상이하고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또한 다용도실 출입 창호의 높이가 견본주택 건립세대보다 일부 낮아짐.
- 107동 202호의 경우, 방범상의 이유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의 지붕층으로 접근은 불가능하도록 창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시설 지붕층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활동에 의해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 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비박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단차 및 적용위치는 사용성을 위해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내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모형, 카달로그,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 공간임.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117A㎡, 117B㎡, 128A㎡, 128B㎡, 128C㎡의 테라스는 해당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주동의 외벽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테라스 벽면에 청소용 고리가 설치되며, 주동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테라스를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방을 할수 있으나, 해당세대는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117A㎡, 117B㎡, 128A㎡, 128B㎡, 128C㎡의 테라스에는 해당세대 및 지붕(세대 및 옥탑포함)의 우수처리를 위하여 외벽 및 바닥에 우수선홍통 및 트레치가 본공사 시 설치됨. 배수시설은 별도로 설치 안 됨.
- 128C㎡세대는 지붕에 단지 디자인을 위한 지붕 구조물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외부 강풍 시 개별 세대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환기시스템 작동 시 웬 가동에 따른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냉난방용 에어컨 공사의 경우, 위탁사(시티글로벌㈜) 공사분으로 진행될 예정임.
-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59, 79, 84type의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상배관방식과 상이함.
- 117, 128type의 오배수배관은 층상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하배관방식과 상이함.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 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기전연동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기전에 한해 가능함.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무상지원됨.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 주광색 등으로의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에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창문 닫기 및 보온초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건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나 계약 전 확인 바람.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별도 유상옵션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체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 및 제품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계약서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제품을 지정불가 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추후 옵션 계약 시 해당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몰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시 해당위치에 국산타일(300\*6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시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주방기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관중문(유상옵션)은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마감 선택 시 강마루 및 현관 디딤판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 디테일 및 니누기도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자재의 특성상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은 건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
-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선택 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빌트인 펜트리가 같이 제공되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청공사, 도배공사, 기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 입주예정일 : 2023년 02월 예정 (공사 일정, 인허가 등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 단위 : 원 / V.A.T포함 ]

구분	건축	전기	소방 . 정보통신	비고
상 호	(주)에이엔에스건축사사무소	(주)케이씨엔지니어링	(주)피씨엠글로벌기술사건축사사무소	
금 액	2,248,769,000	466,837,100	423,5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 KS F2292 1등급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 내 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기타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본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등급
내진능력	VII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7.0m이상(연석포함)이며 출입구의 높이는 2.7m이상 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71,409,049,000	제01292020-101-00065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한 사항
  1.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분양대금채권(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
  2. 제1항에 따라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
  3.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기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  |
|--|
|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웬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차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관리형 토지신탁

- ①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시티글로벌(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티글로벌(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티글로벌(주)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티글로벌(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티글로벌(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티글로벌(주)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습니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정보 및 안내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속초시 조양동 1557-1 / ☎1566-257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시행수탁자 및 시공업체, 시행위탁자 현황**

구 분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 호	(주)하나자산신탁	롯데건설(주)	시티글로벌(주)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0014764	284911-0133113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70, 2001호(영랑동, 동진리조트오피스텔)